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시 보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10호 2016. 2. 26(금)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 2016-27 호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1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6-269 호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3
- 남원시 공고 제 2016-273 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4
- 남원시 공고 제 2016- 227 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20

읍·면·동

- 남원시 운봉읍 공고 제 2016 - 9 호 운봉읍 CCTV설치 행정예고21

회 람										
--------	--	--	--	--	--	--	--	--	--	--

남원시 고시 제2016 - 27호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경미한 변경) 고시(지리산헬스뷰티타운조성)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하고 관련도서를 남원시 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남 원 시 장

2016년 2월 26일

1. 남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수립) 결정(변경) 조서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구		획 지					비 고
가구번호	면적(m ²)	획지번호	위 치	면 적(m ²)			
				당초	변경	증감	
1	25,498	①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7,284	9,460	증2,176	
		②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4,123	4,123	-	
		③	남원시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14,091	11,915	감2,176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해당없음)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가구	획지					
1	①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골프연습장, 사무소, 노래연습장 -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전시장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높이(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4층 이하 		
			배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②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미용원, 목욕장, 의원, 한의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 제15호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높이(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4층 이하 		
			배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③	운봉읍 동천리 388번지 일원	용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미용원 -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직업훈련소 -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 이하 		
			높이(층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 4층 이하 		
			배치·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망향을 고려하여 배치 		
			색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색채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원시 건축 조례 [별표4] 1m 이상 		

다.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도면 : 실음생략

남원시 공고 제2016 - 269호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5일

남 원 시 장**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가.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변경(안 제7조)**

- 결산 검사의 내용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3. 의견 제출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 :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할 곳 : 우 590-210 / 남원시 시청로 60 / 남원시청 재정과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원시청 재정과(063-620-66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2.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재 정 과 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결산검사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세입·세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결산 검사의 내용과 범위 변경(안 제7조)

- 결산 검사의 내용에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 추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2. 25. ~ 2016. 3. 16.(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4조”를 “제134조제3항”으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회 (이하 “위원회” 이라 한다)”을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회”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에 따른 위원은 남원시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남원시 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가 선임한다.

제3조 제1항 단서 중 “시의회”를 “의회”로, “위원 중 1인”을 “위원 중 1명”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남원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을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남원시의회의”를 “의회의”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을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제2항 단서 중 “남원시의회”를 “의회”로 한다.

제5조 제1항 중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남원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남원시”로, “남원시의회”를 “의회”로, “형제자매인 자는”을 “형제·자매인 사람은”으로 한다.

제6조 제1항 중 “남원시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을 “결산 검사”로, “ 검사결과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를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유고시에는 남원시의회의”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의”로 한다.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를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결산개요
2. 세입·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7조 제2항 중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을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으로,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4조제3항에 따른”으로, “위원이 연명으로”를 “위원이”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있을 때에는”을 “있으면”으로 한다.

제1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장은 결산검사 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

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를 “제4조 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의”를 “위원이”로,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조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여비지급기준”을 “여비 지급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04. 12. 2, 2007. 7.10>

위원의 일비 및 여비지급기준 (제13조관련)

구 분	액 수
일 비	100,000원
여 비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여비지급 구분표상의 부시장 상당액

[별지서식]

위 축 장

○ ○ ○

남원시의 결산검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남 원 시 의 회 의 장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u>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u>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제134조제3항</u>----- ----- <u>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u>----- ----- ----- ----- -----.</p>
<p>제2조(위원의 정수) <u>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u></p>	<p>제2조(위원의 정수) <u>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u></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u>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남원시 의회의장이 추천하여 남원시의회가 선임한다.</u> 다만, <u>시의회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원 중 1인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u></p>	<p>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 ① <u>제2조에 따른 위원은 남원시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남원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u> -- <u>의회</u> ----<u>위원 중 1명</u>----- ----- -----<u>사람으로</u> ----- -.</p>
<p>② <u>남원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u></p>	<p>② <u>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할 경우에는</u> ----- -----.</p>
<p>③ <u>남원시의회 의장은 선임된</u></p>	<p>③ <u>의회의</u> -----</p>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기간) ① (생략)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남원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남원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남원시의회 의원으로 한다.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남원시의회의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남원시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

제4조(위촉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의회-----

-----.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 ① ----
--- 남원시-----
-----.

② 남원시-----
----- 의회 -

형제·자매인 사람은 -----
-----.

제6조(대표위원) ① -----
----- 의회 ----
-----.

② ----- 결산검사----
-----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
----- 경우에는 -----
-----.

③ ----- 부득이한 사유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는 의회의 -----.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 1. 세입세출의 결산
- 2.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 3. 채권 및 채무의 결산
- 4. 재산 및 기금의 결산
- 5. 금고의 결산

<신 설>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원시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제8조(검사 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

① 위원은 -----
-----.

- 1. 결산개요
- 2. 세입·세출의 결산
- 3. 재무제표
- 4. 성과보고서
- 5. 결산서의 첨부서류
- 6. 금고의 결산

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
-----.

제8조(검사 협조) -----

----- 경우에는 ---
----- 없으면 -----
-----.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
----- 제84조제3항
에 따른 -----
----- 위원이 -----
-----.

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일비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② (생략)

<신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남원시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남원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의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 있으면 -----
-----.

제10조(일비의 지급) ① 시장은 결산검사 기간에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 ① -----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

----- . <단서 삭제>

② -----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
-----.

제12조(여비의 지급) 위원이 -----

----- 경우에는 -----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13조(지급기준) -----
----- 따라 -----
-----.

여비 지급기준 -----
-----.

제14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
행에 -----
-----.

남원시 공고 제2016-273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2월 26일

남 원 시 장**남원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1. 개정이유**

- 가. 위원회의 기능에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성별 영향을 고려하는 사업 추진
- 나. 분과위원회의 소관분야를 개정하여 현행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의 기능 등 (안 제3조 제2항의3호)
 -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 성별영향을 고려한 사업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 나. 분과위원회 설치 등(안 제11조 제1항의1호)
 -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 :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 : 시민소통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 가.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17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 의견을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16. 2. .
 제출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 위원회의 기능에 여성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성
 별 영향을 고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 분과위원회의 소관분야를 개정하여 현행규칙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
 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기능 등 (안 제3조 제2항3호)

-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 성별영향을 고려한 사업 및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나. 분과위원회 설치 등(안 제11조 제1항1호)

- 1)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 :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 : 시민소통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6. 2. . ~ 2016. . .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남원시 규칙 제 호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후단 삭제

제3조 제2항제3호 중 “예산편성”을 “성별 영향을 고려한 사업 및 예산편성”으로 한다.

제4조 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사정의 이유로”를 “사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반하는”을 “어긋나는”으로 한다.

제1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업무”를 “위원회의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관광과”를 “시민소통실, 총무과, 문화관광과”로 한다.

제16조 중 “관해”를 “관하여”로 한다.

제21조 중 “수당 또는 실비”를 “수당과 여비”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이 규칙에 따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u>가·부 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u></p>	<p>제2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 ----- ----- --. <삭제></p>
<p>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2. (생략) 3. <u>예산편성</u>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사항 4. ~ 6. (생략)</p>	<p>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성별 영향을 고려한 사업 및 예산편성</u> -- 4.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②·③ (생략)</p>	<p>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 <u>구성하되,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2. (생략) 3. 개인 <u>사정의 이유로</u> 스스로</p>	<p>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 ----- <u>경우</u> <u>에는</u> ----- -----. 1. 2. (현행과 같음) 3. ----- <u>사정으로</u> -----</p>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생략)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분야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문화관광체육 분과위원회 : 문화관광과, 교육체육과, 시설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②·③ (생략)

제12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 ①·② (생략)

④ (생략)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1조(실비보상 등) 시장은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대표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

----- 어긋나는 -----

-

5. (현행과 같음)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

1. -----

시민소통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2.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분과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운영세칙) -----

-- 관하여 -----

-----.

제21조(실비보상 등) -----

--- 수당과 여비-----.

남원시공고 제2016-227호

공인 등록 및 폐기 공고

남원시 공인 조례 제6조(공인의 신조, 개각) 및 제11조(공인의 폐기) 규정에 의한 공인 신조 및 폐기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9조(공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18일

남 원 시



□ 공인 신조 등록 [덕과면]

- 1. 공인 등록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
- 2. 공인 등록 일 : 2016. 2. 18.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6조
- 4. 등록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등록	남원시덕 과면장인 인증기전용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덕과면

□ 공인 폐기 [덕과면]

- 1. 공인 폐기사유 : 민원발급용 인증기 교체
- 2. 공인 폐 기 일 : 2016. 2. 18.
- 3. 관련 조 례 : 남원시 공인조례 제11조
- 4. 폐기 공인명 및 인영

구 분 (폐기/등록)	공인명	규격·서체 (cm)	재질	인영	관리부서
폐기	남원시덕 과면장인 인증기전용	2.1cm×2.1cm 정방형 한글전서체	NBR		덕과면

남원시 운봉읍 공고 제 2016 - 9호

운봉읍 CCTV 설치 행정 예고

운봉읍 청사주변 각종 쓰레기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운봉읍 청사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운봉읍 주민생활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2월 일

운 봉 읍 장

1. 사 업 명 : 운봉읍사무소 청사주변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설치
2. 시 행 처 : 운봉읍사무소
3. 공 고 기 간 : 2016. 2. 26 ~ 2016. 03. 16(20일간)
4. 의 견 제 출 : 2016. 2. 26 ~ 2016. 03. 16(20일간)
5. 공 고 방 법 : 남원시 홈페이지(<http://www.namwon.go.kr>)
6. 근 거 법 규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7. 설 치 장 소 : 운봉읍사무소 청소차량 주변 CCTV 설치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운봉읍사무실 주민생활계로 방문,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처 : 운봉읍사무소 주민생활계
- 접수기간 : 2016. 2. 26 ~ 2016. 3. 16(20일간)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팩스(063-620-6721)
- 문의처 : 운봉읍 주민생활계(☎ 063-620-3817)

※ 제출 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